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50호】

거짓구인광고 신고에 대한 회신문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거짓구인광고 신고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함을 공고합니다.

2018. 8.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거짓구인광고 신고에 대한 회신문 공시송달
2. 근 거 : 직업안정법 제3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8. 8. 8. ~ 2018. 8. 22. (15일간)
5. 문 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손성달(☎ 031-850-7714)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의정부지청 3층)